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Ⅲ)

공동집필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목 차〉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그리스
5. 이탈리아
6. 룩셈부르크
7. 덴마크
8. 모드부길
9. 네덜란드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88년 5월 24일에 대통령령 제244호에 의하여 EU지침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규정을 제정하였고, 1988년 7월 30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본래 이탈리아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민법(Codice Civile)의 규정에 근거한 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조물책임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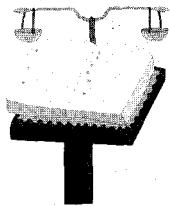
한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제조물책임규정은 EU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선택사항 가운데 어느 사항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일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관하여 책임한도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한 시기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이 배제된다.

6.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1989년 4월 21일에 [결합제조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9년 4월 28일에 공고하였으며, 이 제조물책임법은 1942년의 [대공령]에 따라서 공고한 4일 후인 1989년 5월 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룩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지 아니한 특징이 있는 이외에,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에 특징이 있다. 특히 류셈부르크가 EU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한 이유는 국내에 제조업이 별로 없으므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여도 산업의 위축에 의한 불이익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현실이다.

한편,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반입되는 결합제조물로부터 국내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 제1조에 의하면,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통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결함”은 특히 ①제조물의 외관 ②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제조물의 용도 ③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다만 개량된 제조물이 이 사후에 유통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조물이 결합제조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또한 류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①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물이 유통될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함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③제조자가 제조물을 판매, 기타 경제적 목적이 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적 활동의 범위에서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조물이 공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규제에 합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⑤결함이 그 구성부품을 조합한 제조물의 설계자나 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구성 부품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7.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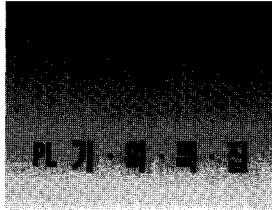
덴마크에서는 1989년 5월 30일에 제조물책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989년 6월 7일에 국왕의 재가에 의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성립하였고, 1989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덴마크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완성품·구성부품·원재료의 제조자, 자연생산물의 생산자, 타인이 제조한 제조물에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에게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을 EU역내에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에 해당되고, 제조물의 공급자도 피해자가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공급자는 자신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이전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하여 제조물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그리고 덴마크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1차 농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되고 있는 한편, 책임한도액은 설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8.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1989년 10월 5일에 대통령이 내각에 의하여 승인된 제조물책임에 관한 정령을 공포하였으며, 이 제조물책임정령이 1989년 11월 6일에 관보에 고시되었다. 우선 포르투갈 제조물책임정령은 “제조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정령에 의한 제조자는 ①완성품의 제조자 ②구성부품의 제조자 ③원재료의 제조자 ④명칭이나 상표 등에 의하여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를 의미하며, 역시 EU역내로 제조물을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에 해당하지만, “공급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제조사·수입업자 혹은 이전의 공급자의 신분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는 공급자의 제조물책임이 배제된다.

포르투갈 제조물책임정령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서 제1차농산물은 제외되고 있고, 역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된 인신손해에 대하여 총액 100억PTE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9.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EU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규정을 다른EU국가와 달리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민법(Burgerlijk Wetboek)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네덜란드제조물책임규정은 지난 1990년 9월 13일에 성립하였으며,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지침 제1조와 제7조를 고려하여 규정된 네덜란드민법 제1407a조는 제조자에게 “위험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다만 ①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당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함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③결함이 강제적 행정규정을 준수한 사실의 결과인 경우 ④학문적·기술적 지식에 근거하여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에 결함의 발생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제조자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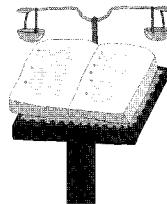
또한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는 결함이 원재료 혹은 부품을 그 구성부분으로 이용한 제조물의 설계자 혹은 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항변을 인정한다.

그리고 결함은 특히 ①제조물의 외관 ②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조물의 용도 ③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조물로부터 기대되는 안정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후에 개량제조물이 유통된다는 사실만에 의해서는 제조물이 결함제조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네덜란드민법 제1407a조에서부터 제1407i조까지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은 동산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구성부분 및 전기를 포함하고, 다만 미가공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혹은 수렵물은 제조물에서 제외된다. “제조자”에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 명칭 혹은 상표 기타 표시를 통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제조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제조물을 판매·임대차 혹은 리스 기타 방법을 통한 영업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EU역내에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간주되며, 역시 제조물의 제조자와 동일하게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적당한 기간내에 제조자 혹은 이전의 공급자의 신분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네덜란드민법 제1407a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위험책임은 사망이나 신체침해에 의한



인신손해, 그리고 제조물을 통하여 다른 물건에 야기된 재산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개인적 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개인용 재산 혹은 프랜차이즈 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하여 주로 개인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만 제

조물책임이 성립한다.

그리고 재산손해가 1,263.85hf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책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제조물책임규정은 동일결합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다.

EU가맹국의 입법현황

No	국가	입법시기 또는 상황	입법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여부	
1	영국	1987. 5. 15 제정 1988. 7. 01 시행	소비자 보호법	제외	채용	없음	제1회 제조물책임
2	그리스	1988. 2. 31 제정 1989.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부령	제외	채용	72억384만 Drachmas	(약 5,040 만 달러)
3	이탈리아	1988. 5. 24 제정 1988. 7. 30 시행	제조물책임 대통령령	제외	채용	없음	
4	룩셈부르크	1989. 4. 21 제정 1989. 5. 02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적용	불채용	없음	
5	덴마크	1989. 6. 07 제정 1989. 6. 10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외	채용	없음	
6	포르투갈	1989. 11. 06 제정 1989. 11. 21 시행	제조물 책임령	제외	채용	100억 Escudo	
7	독일	1989. 12. 15 제정 1990.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외	채용	1억6천만 DM	단,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이 있으므로 적용제외
8	네덜란드	1990. 9. 13 제정 1990. 11. 01 시행	민법개정	제외	채용	없음	
9	벨기에	1991. 2. 25 제정 1991. 4.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외	채용	없음	
10	프랑스	1998. 4. 30 제정 국민회의 가결 1998. 5. 21 공포	민법개정	제외	채용	없음	
11	스페인	1994. 7. 06 제정 1994. 7. 07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외	제용 (일부부정)	105억 Peseta	
12	아일랜드	1991. 12. 04 제정 1991. 12. 16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외	채용	없음	
13	북아일랜드	1987. 11. 26 제정 1988. 3. 01 시행	제조물책임 명령	제외	채용	제외	